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1.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처리 결과(법 제12조, 제20조 및 제52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등록 현황(법 제26조 관련)		

2. 안전공사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검사업무 실시 결과(법 제9조, 제11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법 제13조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라.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결과(법 제14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9항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